

학 교 법 인 장 춘 학 원

2020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인	2인
재적임원	8인	2인
참석임원	7인	1인

1. 일시 : 2020. 1. 16.(목) 11:30~12:50 (회의소집 통보일 : 2020. 1. 8.)

2. 장소 : 안동과학대학교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 임원	이사 7명	신정용, 권기덕, 권재주, 임규봉, 서재수, 심용선, 김선웅	
	감사 1명	금정호	
불참 임원	이사 1명	김미현	
	감사 1명	이시우	

4. 안건

- 1) 2019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 2)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 3) 2020회계연도 법인회계 본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 4)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본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 5) 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
- 6)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7)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 8) 이사회회의록 대표 간(間)서명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9) 기타사항

5. 회의내용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대 표 간서명	이사장	신정용	이 사	서재수	이 사	임규봉
------------	-----	-----	-----	-----	-----	-----

개회시간이 되어 심홍재 사무국장이 참석임원을 보고하자 신정용 의장은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하다.

심홍재 사무국장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이사회 의 구성과 업무, 회의안건에 대하여 간략 하게 보고하다.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1호 2019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심홍재 사무국장에게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의안 제1호) 2019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2019년 12월까지의 법인회계 예산 집행현황,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 수립 배경을 설명한 후, 2019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총액으로 40,834,930원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과목별 주요 내용 및 금액을 배부된 회의자료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신정용 의장은 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시다.

임원 일동 대화 및 토론 후,

임규봉 이사는 현재 법인의 재정여건으로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신청이 불가피하고, 교육부 승인금액 이상의 추가부담 여력이 발생할 경우를 감안하고 현재까지의 예산 집행현황을 반영하여 적절히 편성된 2019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개진하다.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1호 2019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선웅 이사의 동의와 심용선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2호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심홍재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의안 제2호)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2019년 12월까지의 교비회계 집행현황,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에 따른 예산 편성과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수립 배경을 설명한 후, 2019회계연도 대학 교비회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총액으로 등록금

대표 간서명	이사장	신정용	이사	심홍재	이사	임규봉
-----------	-----	-----	----	-----	----	-----

회계 15,588,564,275원, 비등록금 회계 13,188,551,231원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과목별 주요 내용 및 금액을 배부된 회의자료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신정용 의장은 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시다.

임원 일동 대화 및 토론 후,

권재주 이사는 의안 제1호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현재 법인의 재정여건으로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이 불가피하므로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금액을 각각 교비 회계와 법인회계에서 부담하고 현재까지의 교비 예산 집행 현황을 반영하여 적절히 편성된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개진하다.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2호 2018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규봉 이사의 동의와 권기덕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3호 2020회계연도 법인회계 본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심홍재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의안 제3호) 2020회계연도 법인회계 본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2019회계연도 법인회계 예산 집행현황, 2019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경예산, 2020회계연도 법인 운영계획 등 예산 수립 배경을 설명한 후, 2020회계연도 법인회계 예산 총액으로 54,931,290원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과목별 주요 내용 및 금액을 배부된 회의자료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신정용 의장은 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시다.

임원 일동 대화 및 토론 후,

김선웅 이사는 2019회계연도 법인 예산 집행현황과 2020회계연도 법인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적절히 편성된 2020회계연도 법인회계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개진하다.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3호 2020회계연도 법인회계 본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재주 이사의 동의와 서재수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4호 2020회계연도 법인회계 본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심홍재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대표 간서명	이사장	신정용	이사	권재주	이사	임규봉
-----------	-----	-----	----	-----	----	-----

(의안 제4호)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본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심홍재 교육부 예산편성 유의사항, 관련 법령, 2019회계연도 추정 결산 및 대학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반영하여 수립된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본 예산 총액으로 등록금 회계 15,419,941,693원 비등록금 회계 14,172,332,501원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과목별 주요 내용 및 금액을 배부된 회의자료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신정용 의장은 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시다.

임원 일동 대화 및 토론 후,

서재수 대학의 교육목표, 중장기 발전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학령인구 감소, 입학금 감축으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및 복지시설의 개선·확충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수입 등 교육재원 확보 노력과 불필요한 지출 감액으로 등록금 수입 감소를 극복하려는 대학의 노력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개진하다.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4호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본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기덕 이사의 동의와 김선웅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5호 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심홍재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의안 제5호) 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

심홍재 이사(의장)는 총장 임명권, 권한행 행사방법(교법 제 21조 제 1항) 및 임명권 내용과 총장 임명 대상자 및 임명권 행사시기, 제정기관 및 주요 임의, 이사(의장)를 제정된 자에게 해당 임명권 행사한다.

1. 총장 임명 대상자

구분	직명	임명	기초임금	연봉임금
대학(사립대학교)	총장	교수급	2020. 3. 1. ~ 2020. 2. 28.	2020. 3. 1. ~ 2020. 2. 28.

신정용 의장은 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시다.

대표 간서명	이사장	신정용	이 사	김선웅	이 사	이규봉
-----------	-----	-----	-----	-----	-----	-----

[illegible]

(의안 제6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법인 정관 변경사항으로 2019. 2. 1.자 대학 조직 개편 계획에 따른 제80조(하부조직) 개정 사항에 대하여 배부된 회의자료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신정용 의장은 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시다.

임원 일동 대화 및 토론 후,

권재주 이사는 법인과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 조항을 적절히 반영한 정관 변경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개진하다.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6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기덕 이사의 동의와 임규봉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7호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심홍재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한다.

(의안 제7호)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인용해 이두자영은 2004년 교육부 통령안이 발부해 해당 인원이 해당한 기원의 교육 및
기 및 인물의 재가이 필요하여, 교육부 기원해인원이 국가를 기원해인자로, 통령
명령하여 재가 재결하고, 재결안은 교육부장관 인준 재결하여 인준 교육에 사용
하고의 재가 내용을 재부로 통령자료에 재가하여 인준을 결정한다.

대표 간서명	이사장	신정남	이사	김민우	이사	김영호
-----------	-----	-----	----	-----	----	-----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 제4차 회의

- 본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결정사항을 토대로, 본회의결정을 제4차 회의사항으로 결정
- 교육부의 기본계획 제4차 회의 후, 제4차 회의 결정 사항 결정

본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제4차 회의 결정사항을 토대로 결정

본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제4차 회의 결정사항을 토대로 결정

본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제4차 회의 결정사항을 토대로 결정, 본회의결정을 제4차 회의사항으로 결정, 본회의결정을 제4차 회의사항으로 결정, 본회의결정을 제4차 회의사항으로 결정

본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제4차 회의 결정사항을 토대로 결정, 본회의결정을 제4차 회의사항으로 결정, 본회의결정을 제4차 회의사항으로 결정, 본회의결정을 제4차 회의사항으로 결정, 본회의결정을 제4차 회의사항으로 결정, 본회의결정을 제4차 회의사항으로 결정, 본회의결정을 제4차 회의사항으로 결정, 본회의결정을 제4차 회의사항으로 결정

(의안 제8호) 이사회회의록 대표 간(間)서명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권기덕 이사는 신정용 이사장과 임규봉 이사, 서재수 이사를 이사회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으로 선출할 것을 개진하다.

신정용 의장은 심용선 이사의 동의와 김선웅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이사회회의록 대표 간(間)서명 임원으로 신정용 이사장, 임규봉 이사, 서재수 이사를 선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고, 기타사항으로 의안 제5, 7호 의결내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비공개할 것을 제안하다.

임원 일동 대화와 토론 후,

신정용 의장은 임규봉 이사의 동의와 김선웅 의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 없이 찬성하여 의안 제5, 7호 의결내용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의안 제9호 기타사항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지시하다.

대 표 간서명	이사장	신정용	이 사	서재수	이 사	임규봉
------------	-----	-----	-----	-----	-----	-----

(의안 제9호) 기타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법인 및 대학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다.

임원일동은 심홍재 사무국장으로부터 법인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하시다.

6. 폐회선언

신정용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12:50)

학교법인 장춘학원 이사장

신 정 용

이 사

권 기 덕

이 사

권 재 주

이 사

임 규 봉

이 사

서 재 수

이 사

심 용 선

이 사

김 선 웅

감 사

금 정 호

(의안 제6호) 정관 변경 사항

현행 정관	개정(안)
제80조(하부조직) ① 전문대학에 <u>기획처, 교무처, 학생취업처, 사무처, 국제교류처를 둔다.</u> ② 제1항의 <u>각 처에는</u> 처장을 두며,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다. 처장과 부처장은 교직원 중에서 보한다. ③ 각 처에 팀 또는 과를 둘 수 있으며 팀장 또는 과장은 교직원 중에서 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0조(하부조직) ① 전문대학에 <u>대학본부</u>를 두며, 그 세부직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6.> ② 제1항의 <u>대학본부에는</u> 처장을 두며,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다. 처장과 부처장은 교직원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20.1.16.> ③ 좌동 ④ 좌동
	부칙<2020. 1. 1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대표 간서명	이사장	신정홍	이 사	김영수	이 사	이규봉
-----------	-----	-----	-----	-----	-----	-----